

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7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3.12

제출자 : 남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함.

2. 주요골자

- 구청장은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. (안제6조1항)
-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, 수탁취소등에 관한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한다. (안제6조 2항)
-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(안제6조 제4항)
-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.(안제12조)
- 종사자의 징계처분은 남구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한다.(안제14조)

3. 관계 법령

- 영유아보육법

부산직할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(안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 적)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보육시설(이하 "어린이집"이라 한다.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과 위치)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3 조(업무)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
2.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교육 실시
3.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
4. 기타 보육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

제 4 조(취원순위) ①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
2. 의료부조대상자 자녀
3.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
4. 맞벌이 가정의 자녀
5. 일반가정 자녀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근로자 자녀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남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 근로자자녀를 우선 취원하여야 한다.

제 5 조(보육료) 보육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남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2 장 위탁 운영

제 6 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, 수탁취소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남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(이하 "보조금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제 7 조(위탁운영기간)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8 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
-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호법,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9 조(행위의 금지)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
2. 재산의 처분행위
3.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
4.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
제 10 조(약정의 해제)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경우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

1. 수탁자가 관계법규, 행정지시,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
2. 수탁자가 노령 또는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
3.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
4.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제 3 장 종사자 관리

제 11 조(종사자 임연)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연은 구청장이 한다. 다만, 위탁 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

②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

제 12 조(전 보)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.

제 13 조(휴 가)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1.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

근 속 기 간		연가 일수
. 3월이상	6월미만	3 일
. 6월이상	1년미만	7 일
. 1년이상	2년미만	8 일
. 2년이상	3년미만	11 일
. 3년이상	4년미만	14 일
. 4년이상	5년미만	17 일
. 5년이상		20 일

2. 병가는 질병, 부상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3. 공가는 천재지변, 공무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.
4.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.

구 분	대 상	휴가일수
결 혼	본인	7 일
	자녀, 형제자매	1 일
회 갑	본인 및 배우자	5 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1 일
출 산	본인	60 일 이내
	배우자(처)	1 일
사 망	배우자	7 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5 일
	자녀, 형제자매	3 일
	백숙부모	3 일
탈 상	배우자	2 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	1 일
	형제자매	1 일

제 14 조(징계권자) ①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원 장 : 구청장 또는 수탁자 (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)
2. 기타종사자 : 임면권자

②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납구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

제 15 조(징계의 종류와 사유)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.

1. 견책

- 가.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
- 나.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
- 다.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 조성자
- 라.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

2. 해임

- 가. 금치산, 한정치산, 파산선고를 받은 자
- 나.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
- 다.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
- 라.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
- 마. 시설의 재산,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
- 바.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

② 견책 처분을 받은자는 1년간 호봉 승급을 할수 없다.

제 16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